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3229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3
2. 협정안의 개요	4
3. 주요 내용 검토	8
4. 종합의견	15
※ 참고자료	17
1.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현황	19
2. 최근 10년간 국제형사사법 공조 현황	21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2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4년 8월 27일
3. 회부일자 : 2024년 8월 2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23개 조로 구성)

- 가. 양 당사국은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신원 확인과 진술 취득,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 수집,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범죄 수익의 처분 제한·몰수 등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안 제2조).
- 나.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

당사국의 허가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음(안 제3조).

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조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이 협정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
했더라도,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제기되는 모든 공조 요청에 적용
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8. 6. 문안 교섭 개시
- 2023. 6. 최종 문안 합의
- 2023. 9. 25. 제40회 국무회의 심의
- 2023. 10. 11. 서명(서울)
- 2024. 8. 13. 제35회 국무회의 심의

Ⅲ. 검토의견

1.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이에 따른 국제화 현상의 심화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국제화 현상의 심화는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경을 초월한 각종 테러,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및 경제·금융 관련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 수행에 필요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국외에 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제사회는 범죄의 국제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사법공조 없이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의 진압이나 예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UN 형사사법공조모델조약(UN 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이하 ‘UN 모델조약’이라 함)」을 채택하였음.

UN 모델조약은 증언이나 진술청취, 피구금자의 증언, 수사협조, 법원서류송달, 압수·수색, 물건 및 현장에 대한 조사, 정보·증거물의 제공, 관련서류 및 기록의 제공 등을 국가 간의 형사사법 공조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UN 모델조약은 국가 간 형사사법제도의 차이 및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수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3년 호주와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발효된 이후 2024년 9월 기준 캐나다, 미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총 33개국과 양자 간 조약이 체결·발효¹⁾되었음.

2. 협정안의 개요

가. 주요 내용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되었음.

협정안은 전문 및 본문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모델조

1)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현황 참조

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UN 모델조약과 동 협정의 주요내용 비교 등

구분	UN 모델조약	한-에콰도르 형사사법공조 협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적용 범위	- 일방 당사자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사법 절차 진행 시 상대국은 지원 제공(제1조제1항)	- 좌동(제1조제1항)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국제적인 협력 증진(제1조)
	- 상대국 형사판결 집행, 형사 재판절차의 이관 등은 공조 범위에서 제외(제1조제3항)	- 좌동(제1조제3항)	
공조 절차	- 중앙 담당 기관 지정(제3조)	- 중앙당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제4조 제1항나호) - 공조 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국은 전자 우편과 같이 피요청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후 즉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제6조제1항)	-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이 공조 요청 접수 및 자료 송부,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행 가능(제11조)
임의적 공조 거절	- 주권·안전·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공조 요청(제4조제1항(a))	- 좌동(제8조제1항라호)	- 좌동(제6조제1호)
	-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처벌 위한 공조 요청(제4조제1항(c))	- 좌동(제8조제1항다호)	- 좌동(제6조제2호)
	- 정치 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제4조제1항(b)) -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 좌동(제8조제1항마호)	- 정치 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제6조제3호)

구분	UN 모델조약	한-에콰도르 형사사법공조 협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제4조제1항(f))		
임의적 연기	- 진행 중인 수사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조 요청(제4조제3항)	- 좌동(제7조제1항)	- 좌동(제7조)
공조 내용	- 서류의 송달(제10조)	- 좌동(제16조)	- 공조의 범위로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제1호)/서류·기록의 제공(제2호)/서류 등의 송달(제3호)/증거 수집, 압수·수색·검증(제4호)/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제5호)/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제6호) 규정(제5조)
	- 피요청국은 국내법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요청국에 보내기 위해 관계인의 진술이나 증거를 취득(제11조제1항)	- 좌동(제11조제1항)	
	- 피요청국은 자국 및 파견금인의 동의를 전제로, 동 파견금인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대한 협조를 위해 요청국으로 일시 이송(제13조제1항)	- 좌동(제13조제1항)	
	- 피요청국은 증거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하여 관계인이 요청국의 형사 소송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참석하도록 협조(제14조제1항)	- 관계인이 증거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피요청국에 공조 요청 가능(제12조제1항)	
	- 피요청국은 국내법에 부합되는 한도에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요청국에 송부(제17조)	- 좌동(제17조)	
	- 피요청국은 몰수 관련 요청국 판결을 집행하거나,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제18조)	- 피요청국은 자국법의 한도에서 스스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을 요청국으로 인도 가능(제18조)	
비용	- 공조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요청국이 비용을 부담(제20조)	- 좌동(제19조)	- 원칙적으로 공조 요청에 드는 비용을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규정(제36조)

나. 국회 비준동의 사유

동 협정안 제4조에서는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을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연락처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에서는 공조요청 접수 및 공조자료 송부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하되,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동 협정안 제8조에서는 공조요청이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공조의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공조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동 협정안은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2)에 따라 비준동의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

2)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 주요 내용 검토

가. 공조의 범위 (안 제2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조 공조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 파악과 신원 확인 나.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의 수집 다.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진술 취득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증거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조 사. 증거 목적으로 범죄 수익, 자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소재 파악, 추적, 처분 제한, 추징 또는 몰수 아. 요청당사국에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통지, 그리고 자.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 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형태의 공조	Article 2 Scope of Assistance Assistance under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a) locating and identifying persons required for an investigation or judicial proceedings; (b) providing documents and records, and collecting evidence; (c) taking testimony from persons required for an investigation or judicial proceedings; (d) serving documents; (e) executing requests for search and seizure; (f) assisting in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or others to give evidenc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g) identifying, locating, tracing, restraining, forfeiting or confiscating the proceeds of crime, property, instruments or other items for evidentiary purposes; (h) informing the Requesting Party of the progress of judicial proceedings; and (i) any other forms of assistance 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not prohibited by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협정안 제2조는 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사람의 소재·신원 확인과 진술 취득, 서류 및 기록의 제공과 증거 수집,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범죄 수익의 처분 제한·몰수 등 형사사건에서의 상호 공조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정보 또는 증거의 사용 제한 (안 제3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조 정보 또는 증거의 사용 제한 1.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는다. 2.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재량으로 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Article 3 Limitations on Use of Information or Evidence 1.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use or transfer any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in a request for criminal legal assistance without the prior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equested Party. 2. If the Requesting Party needs to disclose or use all or part of the information or evidence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request for assistance, it shall request authorization, in advance, in writing, to the Requested Party, which in its discretion may allow or deny, in whole or in part, the request.

협정안 제3조제1항에서는 “요청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정보 또는 증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협정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 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이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피요청당사국에 해당 요청 수락 여부의 재량을 부여하였음.

다. 중앙당국 (안 제4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4조 중앙당국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한다. 가.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나. <u>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u> 2.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은 직접 상호 연락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한다.	Article 4 Central Authorities 1.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and implement the activitie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designate the following Central Authorities as contact points: (a) for the Republic of Ecuador, the State Attorney General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State Attorney General; and (b) <u>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Justice or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u> 2. 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o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order to respond to requests for criminal legal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3. 당사국은 중앙당국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기적절하게 상호 통보한다.	assistance. 3.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a timely manner of any change in the designation of their Central Authorities.

협정안 제4조제2항에서는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하거나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 직접 상호 연락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중앙당국으로서 연락처에 해당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조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자료송부를 외교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³⁾의 특례에 해당함.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다수⁴⁾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서도 공조요청 및 접수를 담당할 중앙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을 지정하고 있는바, 형사사법업무의 전문성·효율성 및 신속한 공조업무의 수행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라. 공조의 거절 (안 제8조)

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4)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페루, 쿠웨이트,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멕시코 등.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8조 공조의 거절 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자국법 및/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어느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범죄와 사실 관계가 같은 범죄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 종교, 이념이나 그 밖의 형태의 차별을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당사국의 공공질서, 주권, 국가안보나 기본적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마.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u>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u>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사.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Article 8 Refusal of Assistance 1. The Requested Party may refuse assistance when it determines that: (a) the request is contrary to its laws and/o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the request is related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 crime, the same facts for which the person has been finally acquitted, convicted or pardoned in the Requested Party; (c) the request has been made with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because of race, sex, social status, nationality, religion, ideology or any other form of discrimination; (d) the granting of assistance may impair the public order,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or basic public interests of the Requested Party; (e) the request refers to a political offense or <u>an offense under military law which is not also an offense under ordinary criminal law;</u> (f)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r punishment of a person for conduct that would not, if it had taken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have constituted an offense; or (g) the request relates to the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se for which, as a result of the lapse of time, the person could not be prosecu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2.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의 이유를 통지한다.	2. I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assistance, it shall inform the Reques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3.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3. Before refusing a request, the Requested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Party to determine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e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m.

협정안 제8조에서는 공조요청에 대한 거절 사유들을 열거함으로써 양국 간 사범공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조 거절 사유 중 같은 조 제1항마호의 “군법에 따른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형사사범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범 공조법」 제6조5)에 따른 공조의 제한사유와 유사함.

동 협정안에서는 군법상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공조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범 공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공조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함.

5) 「국제형사사범 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군법상의 범죄’란 탈영, 항명 등과 같이 군사적 의무의 침해만을 본질로 하는 범죄행위로서, 일반 형법과는 관계없는 군사법령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국가가 이를 공조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하여 발효 중인 다수의 양자 간 형사사법 공조 조약⁶⁾에서도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법상의 범죄”를 공조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바. 비용 (안 제19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9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과 보수 2.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Article 19 Expenses 1. The Requested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executing a request for assistance, but the Requesting Party shall bear: (a) the expenses associated with conveying any person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any allowances or expenses payable to that person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Party pursuant to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Party; and (b) the expenses and fees of experts. 2. When extraordinary expenses are required, the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to determine the terms and

6) 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제3조제1항나호),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제5조제1항가호), 한-불가리아 형사사법공조조약(제4조제1항가호), 한-페루 형사사법공조조약(제4조제1항가호), 한-캄보디아 형사사법공조조약(제4조제1항가호), 한-마카오 형사사법공조조약(제3조다호) 등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condit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request and the way such costs should be borne.

협정안 제19조에서는 공조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중 사람의 호송 비용,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6조⁷⁾가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나, 같은 법 제3조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동 협정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4. 종합의견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 공조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임.

7)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6조(비용) ①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68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현황

【참고자료 2】 최근 10년간 국제형사사법 공조 현황

【참고자료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현황

□ 다자 조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50개 당사국

(2024. 9월 기준)

기탁처	기탁일	발효일	가입국
유럽평의회	2011.9.29.	2011.12.29	<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u>벨기에</u>,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u>불가리아</u>,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u>프랑스</u>,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u>스페인</u>,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유럽평의회 비회원국: 4개국> 칠레, 이스라엘, <u>러시아</u>, 한국

※ 밑줄 친 국가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국가임.

□ 양자 조약

(2024. 9월 기준)

번호	국명	서명일	발효일
1	호주	1992.08.25.	1993.12.19.
2	캐나다	1994.04.15.	1995.02.01.
3	프랑스	1995.03.02.	1997.03.08.
4	미국	1993.11.23.	1997.05.23.
5	몽골	1999.05.31.	2000.01.27.
6	홍콩	1998.11.17.	2000.02.25.
7	중국	1998.11.12.	2000.03.24.
8	뉴질랜드	1999.09.15.	2000.03.30.
9	러시아	1999.05.28.	2001.08.10.
10	우즈베키스탄	2003.02.12.	2004.11.23.
11	태국	2003.08.25.	2005.04.06.
12	베트남	2003.09.15.	2005.04.19.
13	인도	2004.10.05.	2005.06.08.
14	브라질	2002.12.13.	2006.02.08.
15	멕시코	2005.09.09.	2007.01.18.
16	일본	2006.01.20.	2007.01.26.
17	알제리	2006.03.12.	2007.06.15.
18	쿠웨이트	2007.03.26.	2008.04.08.
19	필리핀	2003.06.03.	2008.11.17.
20	불가리아	2008.10.01.	2010.04.08.
21	카자흐스탄	2003.11.13.	2012.09.10.
22	벨기에	2007.01.17.	2012.09.29.
23	스페인	2009.03.23.	2012.12.01.
24	아르헨티나	2009.08.31.	2013.07.27.
25	말레이시아	2010.12.10.	2013.09.26.
26	인도네시아	2002.03.30.	2014.04.03.
27	남아공	2007.05.03.	2014.06.20.
28	페루	2007.09.09.	2016.07.20.
29	UAE	2014.02.28.	2017.05.17.
30	이란	2016.05.02.	2018.02.09.
31	캄보디아	2019.11.25.	2021.2.24.
32	마카오	2019.10.23.	2021.3.11.
33	키르기즈	2018.11.14.	2021.9.11.
34	에콰도르	2023.10.11.	-
35	싱가포르	2027.07.24.	-

【참고자료 2】 최근 10년간 국제 형사사법구조 현황('14 ~ '23)

(단위 : 건수(%))

연 도	구 분	계	한국 요청	외국 요청
2014		264(100)	184(70)	80(30)
2015		347(100)	236(68)	111(32)
2016		357(100)	220(62)	137(38)
2017		400(100)	240(60)	160(40)
2018		515(100)	320(62)	195(38)
2019		610(100)	375(61)	235(39)
2020		622(100)	420(68)	202(32)
2021		1,026(100)	741(72)	285(28)
2022		1,250(100)	1,043(83)	207(17)
2023		1,271(100)	1,065(84)	206(16)
계		6,661(100)	4,843(73)	1,818(27)

【참고자료 3】 국회동의사유(법제처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협정안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연락처로 지정하도록 하고,
 - 협정안 제8조에서는 공조요청을 받은 피요청당사국이 ‘공조요청이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6조에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협정안은 공조요청 등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중앙당국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협정안	관계 법령
제4조 중앙당국 <u>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한다.</u> 가.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우, 검찰총장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u>나.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u> 2. 3. (생략) 제8조 공조의 거절 <u>1.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u> 가. 공조요청이 자국법 및/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어느 사람이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면을 받은 범죄와 사실 관계가 같은 범죄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 종교, 이념이나 그 밖의 형태의 차별을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당사국의 공공질서, 주권, 국가안보나 기본적인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마. <u>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u> 바.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서 발생했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	제6조(공조의 제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u>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u>
--	---

하거나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사. 공조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에 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 는 범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3. (생략)	
--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